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1. 7. 5.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고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의심거래보고 업무 체계 및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고객의 금융계좌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 및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 중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거래행위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② 전산시스템 기반의 의심거래 추출 이외에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수기로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운용중이나, '일별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 해당 여부만을 체크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적정성 점검도 하지 않고 있어 의심거래 보고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③ 검사대상기간 중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추출되어 검토된 ◎건 중 금융정보분석원에 실제 보고한 것은 ◎건(임의보고 건은 제외)에 불과하며, 일부 의심거래 추출기준은 고객별이 아닌 계좌별 거래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동일 금융거래에 대하여 다수의 추출기준에 의거 복수의 의심거래 경보가 발생하고 있는 등 의심거래 모니터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